| 의안번호 | 제 호 |
|---|---|
| 의결 연월일 | 20 . . . (제 회) |

의결사항

#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제 출 자 | 국무위원 ○○○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 |
|---|---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.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소득으로 보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보상금·지원금의 범위에 「양식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하는 한편,

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 조합비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요건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1. 3. ~ 12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・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3항제4호의3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

제80조제1항제2호가목2)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2호가목1) 및 2)”를 “제1항제2호가목1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3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51조(총수입금액의 계산) ①·② 삭 제 | 제51조(총수입금액의 계산) |
|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| ③----------. |
| 1. ~ 4의2. (생 략) |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|
| 4의3. 어업권, 양식업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·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 | 4의3. ----------. |
| 가.·나. (생 략) |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다.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|
| 5. (생 략) | 5. (현행과 같음) |
| ④ 삭 제 | |
| ⑤ ~ ⑨ (생 략) | ⑤ ~ ⑨ (현행과 같음) |
| 제80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)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 | 제80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) ①---------- |

| | |
|---|---|
| 하는 기부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|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| 2. ----------<br>-------- |
| 가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,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(이하 이 조에서 “단위노동조합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| 가.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 |
| 1) (생 략) | 1) (현행과 같음) |
| 2) 1)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 | <삭 제> |

| | | |
|---|---|---|
| | 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(이하 이 목에서 “연합단체등결산결과”라 한다)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(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). 이 경우 그 교 | |

| | |
|---|---|
| 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| |
| 나.·다. (생 략) |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|
| 3. ~ 5. (생 략) | 3. ~ 5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
|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) 및 2)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 | ⑦ ---------- 제1항제2호가목1)----------.<br>----------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
| ⑧·⑨ (생 략) | ⑧·⑨ (현행과 같음) |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| |
|---|---|
| 연 락 처 | (044) 215 - 4211 |